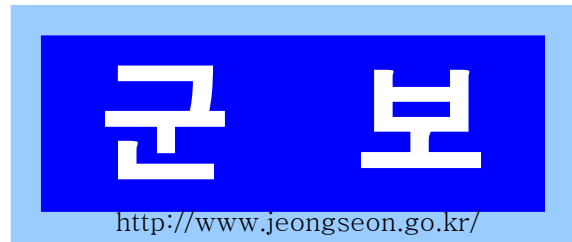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7호 2010. 10. 6.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19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220호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 정선군조례 제222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6
- 정선군조례 제2222호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11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136호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에 따른 성과 고시..... 13
- 정선군고시 제2010-140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 14
- 정선군고시 제2010-141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15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538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8
- 정선군공고 제2010-545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22
- 정선군공고 제2010-54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 공고..... 23
- 정선군공고 제2010-549호 제5기(2011~2014년) 정선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24
- 정선군공고 제2010-552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6차 공고...25
- 정선군공고 제2010-554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7
- 정선군공고 제2010-560호 '10년 사망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29
- 정선군공고 제2010-56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 공고..... 30
-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0. 6.

정선군조례 제2219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1 중 정선군 청소년 수련원란을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란 중 “애산리 605-13번지”를 “봉양리 144-5번지”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청소년수련원(화암면 석곡리 소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활용 부적합 판단에 따라 본 시설을 폐지하고 사용료규정의 삭제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청소년시설 사용료규정 삭제(안 제8조, 안 별표2)
-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변경(안 별표1)
 - 애산리 605-13번지 ⇒ 봉양리 144-5번지
-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0. 6.

정선군조례 제2220호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정선군을 만들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수,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경찰서장,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및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선군청 자치행정과장
2. 정선경찰서 경무과장
3.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4. 정선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노인·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 요 내 용

-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제5조~제7조)
-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협의회 산하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12조)
-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0. 6.

정선군조례 제222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직”을 “정직·강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을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

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을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로 한다.

제2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매 생리기마다” 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 월” 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6조)을 삭제한다.

제5장(제27조)을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 및 연가제도의 개정 등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선서문 개정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조, 안 별표1, 별표1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안 별표4)
- 차년도 연가의 사용기준 신설(안 제19조)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명시(안 제20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안 별표3)
-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의 중복조항 삭제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10. 6.

정선군조례 제2222호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1991. 04. 13 조례 제1480호)

개정(2001. 04. 18 조례 제18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 <삭제 2001.04.18>

제4조 <삭제 2001.04.18>

제5조(부과등) ① <삭제 2001.04.18>

②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01.04.18>

⑤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1.04.18>

제7조(납부독촉) 읍면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부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1.04.18>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폐 지 이 유

○ 상위법령인 「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함

정선군고시 제2010-136호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에 따른 성과 고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성과를 고시(통보)합니다.

2010. 9. 16.

정 선 군 수

지적측량 기준점

기준점구분	기준점 명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설치일자	설치 구분	표지 구분	기준점 소재지
		중선좌표	횡선좌표				
지적삼각보조점	보73	438434.25	172732.8	20100719	설치	표석	북평면 장열리 63 - 1
지적삼각보조점	보74	438383.85	172641.27	20100719	설치	표석	북평면 장열리 65
지적삼각보조점	보75	438061.44	172356.89	20100719	설치	표석	북평면 남평리 산20
지적삼각보조점	보76	437793.33	172191.95	20100719	설치	표석	북평면 남평리 37
지적도근점	1487	438396.33	172569.96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산137
지적도근점	1488	438561.58	172538.03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69
지적도근점	1489	438555.38	172494.23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산145
지적도근점	1490	438503.25	172415.17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산133
지적도근점	1491	438452.75	172366.21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산137
지적도근점	1492	438410.59	172352.01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산137
지적도근점	1493	438366.74	172351.82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산134
지적도근점	1494	438332.27	172332.46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장열리 산134
지적도근점	1495	438253.32	172322.60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남평리 2
지적도근점	1496	438217.03	172328.95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남평리 2
지적도근점	1497	438081.51	172292.33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남평리 5 - 1
지적도근점	1498	437993.78	172253.99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남평리 산20
지적도근점	1499	437946.35	172278.87	20100719	설치	철재	북평면 남평리 23

정선군고시 제2010-140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야를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10. 9. 27.

정 선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m ²)	지정면적 (ha)	사방종류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정선	화암	화암	산71번지외1필지	임	25,686	0.043	사방댐	신봉수 외1

※ 필지별 내역은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정선군청 환경산림과 비치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지정대상 : 사방사업 실행지

4. 지정년월일 : 2010. 9. 27.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는 정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의 벌채, 토석, 나무 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6. 기타 사방지의 지정 구역 도면은 정선군 환경산림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함.

정선군고시 제2010-141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고시 합니다.

2010. 9. 30.

정 선 군 수

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결정·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2년~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38-2번지외 20필지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2)당 가격(원)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고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0.10.30. 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 560-2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내역(정선군)

(단위 : m²/원)

심의 번호	기준 년도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결정지가 (당초가격)	정정 내용	검증가격	부동산평가 위원회		정 결정고시가격	비고 (위치)
		법정동	법정리	지번						심의 가격	심의 결과		
1	2002.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4,380	토지특성 오류	750	750	원안통과	750	조동리 새골
2	2003.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4,380	“	870	870	“	870	
3	2004.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5,330	“	990	990	“	990	
4	2005.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6,100	“	1,270	1,270	“	1,270	
5	2006.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6,340	“	1,400	1,400	“	1,400	
6	2007.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6,340	“	1,400	1,400	“	1,400	
7	2008.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6,340	“	1,400	1,400	“	1,400	
8	2009.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3,290	“	1,400	1,400	“	1,400	
9	2010.1.1	신동읍	조동리	산38-2	잡종지	99,174	1,140	“	1,400	1,400	“	1,400	
10	2002.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7,390	3,670	“	740	740	“	740	조동리 새골
11	2003.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7,390	3,670	“	860	860	“	860	
12	2004.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7,390	4,470	“	980	980	“	980	
13	2005.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7,390	4,970	“	1,250	1,250	“	1,250	

심의 번호	기준 년도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결정가격 (당초가격)	정정 내용	검증가격	부동산평가 위원회		정 정 결정 고시 가격	비고 (위치)
		법정동	법정리	지번						심의가격	심의 결과		
14	2006.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7,390	5,160	토지특성 오류	1,370	1,370	원안통과	1,370	조동리 새골
15	2007.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7,390	5,160	“	1,370	1,370	“	1,370	
16	2008.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7,390	5,160	“	1,370	1,370	“	1,370	
17	2009.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6,852	2,100	“	1,370	1,370	“	1,370	
18	2009.7.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6,852	2,090	“	1,370	1,370	“	1,370	
19	2010.1.1	신동읍	조동리	산42-1	잡종지	66,852	1,140	“	1,370	1,370	“	1,370	고토일
20	2010.1.1	고한읍	고한리	170-1	임	6,821	23,900	“	1,980	1,980	“	1,980	
21	2010.1.1	고한읍	고한리	170-2	임	152	27,700	“	1,690	1,690	“	1,690	

정선군공고 제2010-538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4.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비 신청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지원대상)
 - 전농업인(개인별) ⇒ 전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개인 및 단체)
- 제5조(지원금의 신청)
 - 농업인(개인별)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농·축협(일괄)
- 제6조(보조금의 지급)
 - 농업인(개인별)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농·축협(일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10. 4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전화 560-2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농업인을” 을 “전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 중 “농업인” 을 각각 “농업인 등”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안전공제 가입기관인 농·축협에서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축협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체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보험가입 내 용	보 험 종 류				
	보 험 회 사				
	가 입 금 액	₩			
	보 험 료 (정산액)	계	국·도비	군 비	지역농협
보험료신청액 (군비부담액)	금	원 (₩)			
지원 보험료 입 금 계 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명의자 :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농·축협장 ○ ○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공제증권 사본 1부.

단체가입자는 개별 명단 1부.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생략)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6. (생략)

④~⑥ (생략)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0-545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정선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4.

정 선 군 수

1. 사용일 및 폐기일 : 2010. 7. 12.
2. 신조 및 폐기 이유 :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개정
3. 신조 및 폐기 공인의 인영

신조 및 폐기공인 인영

신조 공인명	인 영	폐기 공인명	인 영
정선군주민생활지원실 자활계정출납원인		정선군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보장계정 출납원인	

정선군공고 제2010-546호

공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 관광문화과에 비치합니다.

2010. 9. 15.

정 선 군 수

다 음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선군도시계획시설사업
(정선군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부진입로 개설공사)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수 최 승 준
- 다. 사업시행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39-4번지 일원
-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소재지	지번 (당초)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전제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정선읍 애산리	639-4 (639-1)	전	전	462 (1,491)	462	전애선	정선읍 애산리		

- 마. 사업의 내용 : 도로개설 L=381m
- 바. 공고기간 : 2010. 9. 15. ~ 2010. 9. 28.(공고일의 익일부터 14일간)

정선군공고 2010-549호

제5기(2011~2014년) 정선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정선군보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16

정 선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0. 9. 16 ~ 2006. 9. 27
2. 의견제출 기간 : 2010. 9. 16 ~ 2006. 9. 27
3. 의견제출 장소 : 정선군군보건소 보건행정팀(☎ 563- 0034 FAX 563-4000)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우 233-808)
4. 제5기 정선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
 -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분야별 추진계획
 - 개별사업계획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정선군 홈페이지 참조

정선군공고 제2010-552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6차 공고

우리군 소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제안을 받았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공모하여 주신 우수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시는 모든분(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9. 20.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10. 9. 20. ~ 2010. 12. 31.

2. 제안자격 :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가. 시설현황

- 부지 : 북평리 332-1번지 일원 59,113m²
- 건물 : 본관 및 학습관외 6동 7,762.4m²

나. 공모방법 : 자유제안

-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방안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 (3)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용방안

4.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설명자료(PPT) 1부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 (3) 부지매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회사 재무재표 등 재무상황 근거자료)

나. 접 수

- (1) 방 문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 (2) 우 편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제안담당자 앞(☎033-560-2432, 2438)

5. 공모심사

가. 심사기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 년차별 투자계획

2)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신뢰성

- 사업관리능력
- 시설운영계획

3)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자기자본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4) 지역경제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계획

나. 심사방법

- (1)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심사
- (2)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평가

다. 결과통보 : 심의 확정후 확정된 안 통보

6. 재산권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 또는 임대

※ 2009년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 약 80억원

7.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공모된 공모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 첨부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현황 1부.

2.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1부. 각 홈페이지 참조

정선군공고 제2010-554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코자 그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9. 20.

정 선 군 수

1. 청문대상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기간	수 허 가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07-59	정선읍 가수리 123-1번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2007.3.28~ 2008.12.31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14-6(3/3)	이 현 옥	기간만료 및 목적사업 미 이행

2. 청문일시 : 2010. 10. 25.(월) 14:00~15:00

3. 청문장소 : 정선군청 청문감사실(본관2층)

4. 청문주재자 :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전중표

5. 청문사유:

가. 처분원인 : 기간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나.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다.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제24조

6. 공고기간 : 2010. 09. 20.~ 2010. 10. 04.

7.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의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선군공고 제2010-560호

'10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0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27.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10년도 사방사업

2. 사업내용 및 토지사용통지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	사용기간	사용목적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재채취수량 및 사용면적		
					주 소	성 명	구 분	종 류	수량 및 면 적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전	315	2010.03.08. ~ 2010.11.22	2010년도 사방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244-1번지 조형아파트 101-607	전윤진	편입 면적	산림유역	30㎡

3.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033-56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569호

공 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청 산업경제과에 비치합니다.

2010. 9. 29

정 선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농공단지조성사업(예미농공단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수 최승준

다. 사업시행지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 : 따로붙임

마. 사업의 내용 : A=107,770m²

바. 공고기간 : 2010. 9. 30 ~ 2010. 10. 13(14일간)

□ 수용대상 토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 소	
신동읍 예미리	836	전	909	218.16 (6/2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51-14	김영자	김두선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	근저 당권
신동읍 예미리	836-1	전	301	72.24 (6/25)			경용택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20 은 행 동 부 아 파 트 115-802	근저 당권
신동읍 예미리	836	전	909	254.52 (7/25)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40-19	이길자	김두선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	근저 당권
신동읍 예미리	836-1	전	301	72.24 (6/25)			경용택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20 은 행 동 부 아 파 트 115-802	근저 당권
신동읍 예미리	885	답	20	2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841	윤성언			사망
신동읍 예미리	881-1	답	112	11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881-1	정희찬			사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5.12.29, 2006.1.26>

토지사용통지서

토 지 소 유 자 또는 점유자	①성명	전윤진		②주민등록번호		미기재	
	③주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244-1 조형아파트 101-607					
④토지소재지	정선군 정선읍 물운리	⑤지번	315	⑥지목	전	⑦면적	4,654m ²
⑧공사기간	⑨ 2010. 3. 8부터 ~ 2010. 11. 22까지(260일간)						
⑩사용목적	2010년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⑪ 자 재 채 취 수 량 및 사 용 면 적	⑫구 분	⑬종 류		⑭수량 및 면적		⑮적 요	
	편입면적	산림유역		30m ²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 때·토석 등 자재채취 및 가도로 사용한 적지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41276-19911일
94.7.2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